

##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31
----------	-----

제안연월일 : 2011. 8. 22

제 안 자 : 서경환의원외5

### 1. 제안이유

- 가.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빈번한 소음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 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을 실천하고 아울러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구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내지 제5조)
- 다.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규정(안 제6조)
- 라.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규정(안 제7조)
- 마.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바. 행정지도, 점검 사항(안 제10조)
- 사.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안 제11조)

### 3. 근거법령

-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2, 제23조
-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 나. 입법예고 사항 : 해당없음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 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규제 대상사업인·허가 부서의 사전협의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을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배출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주민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m<sup>2</sup>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 기기 설치 권고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 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 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 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인근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구청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저진동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 배출행위
4.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1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공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주민감시) 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 중인 특정 공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안심사보고서

## (의안번호 831)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2.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1. 8. 22(월)
- 나. 제안자 : 서경환 의원 외 5명
- 다. 위원회 회부 : 2011. 8. 26(금)
- 라. 위원회 심사 : 2011. 9. 5(월)

###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서경환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특정장비 사용으로 소음이 발생되고, 이동소음원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아울러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구청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내지 제5조)
-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규정(안 제6조)
-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규정(안 제7조)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행정지도, 점검 사항(안 제10조)
-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안 제12조)

#### 4.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2, 제23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영호)

- 본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제정 취지가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으로 원안의결 합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